

2020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challenge 2020) 참가자(팀) 모집 수정 공고

환경분야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환경창업 아이디어·창업자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목 적

- 환경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유도 및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동아리 운영으로 창업 문화 확산 도모
- 유망 환경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보육하고 스타 창업 기업으로 육성하여 환경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개 요

- (접수기간) 2020. 8. 3.(월) ~ 9. 4(금), 24:00까지
- (신청방법)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www.ecostartup.kr) 접수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환경창업대전 운영사무국(02-6395-3121))
- (주 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 최) 환경부
- (후 원) 인천시·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기업협회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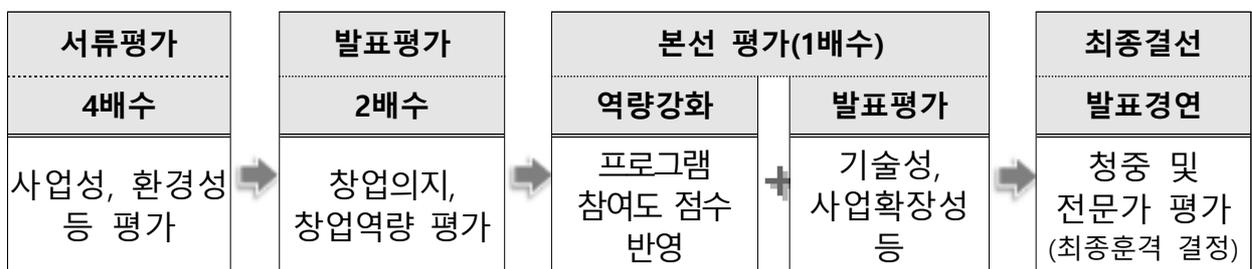
□ 환경창업 아이디어 공모

- (목적) '국민 체감형' 환경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환경 난제 해결방안 모색 및 창업 분위기 확산
- (참가자격) 전 국민 대상(팀으로 참가 시 5인 이내 구성)
 - 일반인·학생·(예비)창업자 등 전국민
 -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출시,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참가제외
- 공모부문

구분	예시
① 환경현안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활화학물질 대응 등 환경 현안의 발생을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 아이디어
② 친환경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제품 중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한 아이디어 ○ 기타 환경기술을 적용한 오염물질 저감 아이디어 ○ 친환경 건축 및 에코디자인 등
③ 4차산업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관련 4차산업(빅데이터, IoT, ICT 등) 혹은 이종분야(생명공학 등)를 접목한 제품.기술 아이디어

* 그린뉴딜 관련(4차산업, 이종분야 융·복합 및 재생에너지) 참가자(팀)에 대한 가점(1점) 부여

- (심사절차)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역량강화캠프 + 본선평가, 최종결선 순(4단계)



○ (시상규모) 총 10팀 수상, 총상금 7,100만원 규모 지급

구분(수량)	훈격	부상	비고
대 상(1)	환경부장관상	상금 3,000만원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1)		상금 2,000만원	
우 수 상(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1,000만원	
장 려 상(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300만원	-
입 선(5)		상금 100만원	

※ 상금에서 세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

※※ 본선평가 탈락팀(10팀)에 대한 격려금 각 50만원 지원

○ 특 전

- 투자기관(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
- 환경벤처센터·환경창업랩 입주 시 가점 2점 제공
- 창업 관련 다수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기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공모전 참가 서약서 1부.
- 상장 증빙서류(해당 시), 그 외 기타 필요서류(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설계도 등)

□ 환경창업 스타기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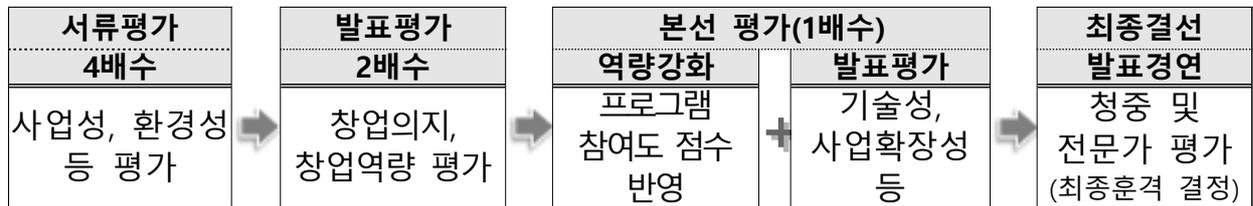
- (목 적)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연계지원 등을 통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참가자격) 환경 분야 창업·벤처 기업
 - 업력 3년 이내(2017년 6월 30일 이후 창업)의 환경 분야 창업자

○ (공모부문)

구분	예시
환경기술 개발	○ 기초환경(물, 대기, 폐기물, 토양, 생태 등) 관리기술, 측정장치 등 개발 및 실용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이종분야 융합 환경기술
측정장치 및 제품 개발	○ 환경 분야 관련 측정장치 및 친환경 제품
환경서비스	○ 환경 분야 측정 및 검사 등의 서비스, 진단 컨설팅,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교육지원, 자연, 문화, 예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서비스

* 그린뉴딜 관련(4차산업, 이종분야 융·복합 및 재생에너지) 참가자(팀)에 대한 가점(1점) 부여

○ (심사절차)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역량강화캠프 + 본선평가, 최종결선 순(4단계)



○ (시상 규모) 10팀 선발, 총상금 12,400만원 규모

훈격(수량)	훈격	부상	비고
대상(1)	환경부장관상	상금 5,000만원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1)		상금 3,000만원	
우수상(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2,000만원	
장려상(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700만원	-
입선(5)		상금 200만원	

※ 상금에서 세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

※※ 본선평가 탈락팀(10팀)에 대한 격려금 각 50만원 지원

○ 특 전

- 투자기관(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
- 환경벤처센터·환경창업랩 입주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제공
- 창업 관련 다수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 아이템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경진대회 참가 서약서 1부
- 자격요건 증빙서류
 - 공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 발급절차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 그 외 기타 필요서류(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설계도 등)

□ 환경창업동아리 모집

- (목 적) 환경분야 우수 아이템 보유 창업 동아리의 발굴·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 도모
- (참가자격)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최소 3인 이상, 5인 내외 구성)
 - ※ 기존 동아리 소속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팀을 이루어 참가 가능
- (선 발) 총 5개 팀 내외
 - ※ 동아리 활동 기간 종료 시 5개 팀 중 우수동아리 1개 팀 선발 및 시상
- (심사기준) 창업 적극성, 사업화 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 ※ 가점 : 1차(서류)평가 시 적용(세부내용 “참고” 참조)
- (심사절차)



- (우수동아리 선정) 선발된 5개 팀 중 활동결과가 우수한 1개 팀 시상
 - (평가내용) 집행실적, 주관기관 행사 참여도, 발전 정도 등 평가
 - (시 상) 최종 우수동아리 1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시상
 - ※ 최종우수 동아리 1팀을 선정해 해외 창업박람회 등 참관기회 부여
 - ※ 우수동아리에 대한 해외 박람회 참관은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생략 가능
- (활동기간) 선정 통보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자금지원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실시, 멘토 연계 등
 - 아이템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원금 팀당 300만원(세액 포함) 지급
 - 필요시 창업 지원공간 관련 지원(회의실, 세미나실 등)
 - 전문가와 기술, 사업화, 투자연계 등 1:1 매칭을 통한 멘토링 진행 연계
 - 청년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관련 교육 제공
 - 창업 동아리 간 활발한 정보교류 기회 제공
- (제출서류)
 - 동아리 신청서 및 사업 아이템 계획서 1부.
 - 참가자 서약서 1부.
 - 그 외 기타 필요서류(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설계도 등)

4. 참가제외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참가자(팀)는 사업참가 불가

< 참가제외 기준 >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18~19년도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중 유사아이템으로 참여하는 참가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본 대회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디어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영위 (하고자)하는 참가자(팀)
 - ※ 【참고2】 참조

5. 유의사항

- 모든 참여자(팀)는 환경창업대전 프로그램 전 과정의 신의성실 참여가 있음
- 증빙자료가 없는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 참여한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참여자(팀)가 별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함

< 공지된 발명 >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 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
- 제안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
 - ※ 공지된 발명의 경우,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
 -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공개 전 / 공개일로부터 최대 1년)를 유념하여 특허 출원 진행

【참고1】

가점 사항(서류평가 시에만 적용)

□ 서류평가 세부 가점 항목

가점 세부 항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다수의 지재권도 1점 한 건으로만 인정)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뉴딜 관련 아이디어 및 아이템 ※ 4차산업 및 이종분야 융·복합 및 재생에너지 분야 	1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참고2】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참고3】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기창업자 해당)

□ 창업여부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같은 경우를 말함

□ 창업업력 기준

-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준일자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의 업력을 적용